UIT Report Vol. 15, No. 1, pp. 215~227, 1984 연구논문집 제15권 제 1 호 pp. 215~227, 1984

企業合併에 關한 研究

李 喜 均
經 營 學 科
(1983. 9. 30 접수)

〈초 록〉

本 論文의 목적은 企業合併에서 발생하는 會計上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동시에 우리나라 合併會計의 문제점에 대한 改善策이 무엇인가를 考察하는데 있다.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會計情報의 有用性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合併會計는 買收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方法으로 처리한으로써 財務諸表가 企業의 財務狀態와 營業結果를 公正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持分「푸울링」法의 立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現實을 감안할 때, 持分「푸울링」法에 의한 企業의 濫用 혹은 惡用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方案이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Lee, Hi Kyoon
Department of Management
(Received September 30, 198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of accounting arising from business combination and to establish a guide to solve them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o promote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most business combinations should be accounted for as purchase method, for this way financial statements present fairly the enterprises financial pos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s. On the contrary, it tends to use a near pooling of interest method in Korea. Being considered the matter of fact,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device so that we prevent the abuse or misuse of the method.

I. 序 論

오늘날 企業社會에서 國際競爭力의 培養과 經營合理化라는 목표아래 企業合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企業合併은 先進國의 현상만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政府나 金融監督機關의 권고에 의하여 많은 企業의 合併이 실행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도 第二次世界大戰後의 技術革新과 新市場의 需要에 맞추어 巨大企業의 필요성과 株主들의 成長企業에 대한 投資關心의 增大로 인하여 企業合併에 따른 産業再編成이 이루어졌다.

企業이 合併하면 그 規模가 확대되어 利害關係者들의 幅이 증대하게 되고 經濟的 意思決定의 새로운 국면을 접하게 된다. 이때 작성하게 되는 合併財務諸表는 利害關係者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에 필요한 情報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들의 合理的 意思決定에 도움을 주기 위

해서는 充分하고 公正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企業合併에 관한 근대의 기초적인 會計問題는 企業合併이 買收法인지 아니면 持分「푸울링」法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經濟的으로 優越한 입장에 있는 支配企業이 他會社를 繼續企業으로서 公正한 價値로 평가하여 買收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買收法을 주장하는 理論과 構成會社들이 株式持分의 人格 즉, 企業資産에 대한 權利義務를 그대로 合併後 存續會社에 承繼하는 것으로 보고 構成會社들의 帳簿價格을 그대로 合計한다는 持分「푸울링」法을 주장하는 理論으로 나누어진다. 企業合併에 따른 會計處理方法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買收法과 持分「푸울링」法은 學界나 實務界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理論的인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會計處理 結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財務諸表利用者에게는 그들의 經濟的 意思決定을 함에 있어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美國에서는 企業合併의 경우 구체적으로 買收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와 持分「푸울링」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를 구분하여 合併會計處理의 實務指針을 提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企業合併이 實行되고 있으며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現實情에서 合併會計處理에 관한 指針의 提示가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제 合併問題에 당면하였을 때 상당한 理論上의 論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恣意的인 會計處理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合併會計處理의 恣意性을 배제하고 客觀的인 公正性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明確하고 一貫性있는 基準 또는 指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本論文에서는 우리나라에서 適用할 수 있는 基準을 合理的으로 設定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合併會計處理方法을 提示하고 우리나라의 合併會計의 現況과 處理方法을 檢討하여 그 改善策을 提示하는데 있다.

Ⅱ. 合併의 槪觀

1. 合併의 意義

合併이란 企業結合의 한 형태로서 企業이 外部的으로 擴大發展하기 위하여 기존의 두개 이상의 企業이 經濟的으로나 法律的으로 독립성을 잃고 보다 큰 하나의 經濟單位로 結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같이 合併은 法律的인 側面과 經濟的인 側面이 겹쳐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구분하여 法律的인 개념과 經濟的인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1)

合併을 法律的인 意味로 보면 두개 이상의 會社가 商法上 規定에 따른 契約에 의해 하나의 會社로 合同하는 法律行爲를 말하며 合併當事會社 중 어느 하나가 存續하고 消滅하는 會社의 財産 및 株主를 그대로 承繼하는 吸收合併(merger)과 合併當事者인 旣存의 會社가 모두 解散하고 이와 동시에 新會社를 設立하여 會社의 財産과 株主를 吸收하는 新設合併(consolidation)이 있다.

經濟的 意味의 合併은 商法上 節次와는 관계없이 合併으로 인한 經濟的 또는 實質的으로 單一企業으로 統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變動을 의미한다.

또한 Wyatt는 會計調査硏究 No.5(Accounting Research Study)에서 "合併은 근본적으로 두 經濟的 持分이 資産 아니면 持分의 交換去來를 위해 協商하는 交換事象이다."라고 表現하고 있는데(2)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게 될 合併會計處理方法 중의 하나인 買收法과 관련하여 合併을 일종의 買收去來로 보는 것이다.

2. 合併의 形態와 그 効果

合併을 하는데는 우선 法律的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한편 經濟的 側面에서 會計處理 등의 복잡한 문제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會計處理와 관련된 經濟的 側面을 前提로 하여 合併의 形態를 大別하면(3)

(1) 同一 또는 類似業種間의 橫的인 合併(horizontal combination)
(2) 財貨, 用役의 生産, 販賣過程上의 縱的인 企業合併(vertical combination)
(3) 特定財貨, 用役의 生産, 販賣企業끼리의 循環的 合併(circular combination)
(4) 相互關聯없는 業種끼리의 自由로운 合併(diversified combination)

(1)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83, pp.362~363.
(2) A.R., Wyatt, A Critical Study of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ARS No.5 (New York: AICPA, 1963), p.104.
(3) 沈炳求, 財務管理, 博英社, 1981, pp.606—607.

등이 있는 바, 이들 企業의 合併은 企業自體의 내부적인 成長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經濟的 効果를 가져올 수 있다.[4]

(1) 資金調達上의 利點
(2) 時間의 단축
(3) 原價面에서 유리
(4) 危險의 減少
(5) 營業信用權의 이용
(6) 새로운 機會의 획득
(7) 安定된 經營
(8) 競爭力의 强化

등의 効果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企業合併에 의한 經營規模의 확대는 불리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企業의 立場에서는 企業經營의 合理化나 經營의 多角化, 經營不振의 打開, 技術水準의 向上을 기하여 國際競爭力强化를 높이는 것이 최대의 目標인 것이다. 이러한 目的으로 현재 財閥企業에서 合併이 점차 盛行하고 있으며 政府는 合併奬勵業種을 정하여 積極的인 合併誘導政策을 推進하고 있다.[5]

Ⅲ. 合併會計의 處理基準과 方法

合併에 대한 會計處理를 1940年代 中半期까지 美國에서는 法律的 側面을 중심으로 吸收合併과 新設合併으로 구분하여 왔지만 2次大戰後에는 合併自體의 經濟的 實質을 중시하여 企業合併을 買收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단순한 株主持分의 「푸울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1)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 (2) 合併會計處理方法의 選擇基準 (3) 合併會計의 處理方法과 財務諸表能力 (4) 實務面에서 인정되고 있는 變形된 合併會計 (5) 合併會計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營業權의 會計處理問題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持分「푸울링」法[6]

持分「푸울링」法은 둘 이상의 會社가 合併할 때 각 會社의 持分 또는 株主集團의 持分이 結合되어 하나의 會社가 되는 合併會計方法이다. 이 方法은 合併會社가 被合併會社의 權利義務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承繼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會社가 하나의 會社로 된다는 見解[7]와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持分「푸울링」法에서는 각 合併當事會社의 持分을 있는 그대로 結合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會社가 하나의 經濟的 企業을 창조한 경우에 나타난다.

이 방법에 따르면 合併會社와 被合併會社의 종래의 持分이 새로운 會社에서도 그대로 承繼되어 계속된다는 立場이며 어느 한 會社가 다른 會社를 買收한다는 견해가 아니므로 兩會社는 동등한 관계에서 종래의 持分을 있는 그대로 合算한다는 것이다.[8] 따라서 合併이전의 當事會社의 株主는 合併後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合併會社의 株主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Wyatt는 持分「푸울링」法에 언급하기를 "一般的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會社가 종래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의 會社로서 營業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會計責任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支持를 받고 있으며 이 假定은 資産의 購入이나 賣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전의 각각의 經濟主體가 하나의 經濟主體로 結合, 合併 또는 「푸울링」된 것에 불과하다."[9]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R.C. Lauver도 「The case for poolings」에서 持分「푸울링」法의 기본적인 會計處理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두 企業이 하나의 企業으로 結合될 때, 合併이전의 두 會社와 똑같은 所有主持分이 존재하고, 이용되는 純資産에 아무런 變動도 없고, 合併企業의 資産, 資本, 그리고 剩餘金이 두 合併當事企業의 그것들의 合計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0] 따라서 合併後 그 存續會社의 帳簿記錄은 消滅會社의 帳簿記錄이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AAP)에 의해 記錄되었다면 그대로 引繼되어야 할 것이다.

---

(4) 沈兩永, 前揭書, pp. 595~596.
(5) 商工部告示, 第 78-2號, 動力資源部告示 第 2號, 山林廳告示 第 6號.
(6) 푸울링法 혹은 持分共同計算法이라고도 한다.
(7) 이것을 人格合一說 혹은 人格承繼說이라 한다.
南相午, 會計理論(下), 日新社, 1979, p. 1260.
(8) 南相午, 前揭書, p. 1261.
(9) A.R. Wyatt, op. cit., p. 15.
(10) R.C. Lauver, "The Case for Poolings", The Accounting Review, (Jan. 1966), pp. 66—67.

1) 持分「푸울링」法의 會計處理

(1) 資産과 負債

合併當事會社의 資産과 負債는 帳簿價格 그대로 새로운 會社에 承繼되어 計算된다. 다만 예외적인 것은 合併當事會社들간에 計定調整을 위해 合理的이고 統一的인 會計處理를 할 경우에는 修正을 필요로 한다. 이로써 새로운 會社의 貸借對照表에는 營業權이 나타나지 않는다. 營業權은 買收法에서 발생하게 된다.

(2) 資本金과 利益剩餘金

合併當事會社의 株主持分은 額面價額대로 合計하여 合併時에 발행되는 株式에 의해서 資本金이 確定되는데 이때 發行되는 株式은 市價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被合併會社의 資本金과 資本剩餘金의 合計로 기록되며 利益剩餘金 역시 計定科目 그대로 合計되어 기록된다. 이때 合併當事會社의 資本金 合計가 合併으로 인해 새로 設立된 會社의 資本金에 미달일 경우 그 未達部分은 利益剩餘金에서 移替되어 새로운 資本金에 轉入되며 반대로 新設會社의 資本金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合併減資差益으로 認識된다. 하나의 企業이 아직도 繼續企業(going concern)인 實體로서 存續하는 한 그 利益剩餘金은 移越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認定되고 있다. 만일 두개의 實體가 合併形態로 存續維持된다면 두 會社의 留保利益을 이월시키는 것은 合理的이라고 할 수 있다.(11)

결과적으로 持分「푸울링」法에 의한 合併會計에서는 合併差益에 상당하는 金額은 원칙적으로 資本剩餘金에서 加減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利益剩餘金에서 조정하여 會計處理하도록 하고 있다.(12)

(3) 當期純利益

合併이 발생한 期間의 合併會社의 當期純利益 뿐만 아니라 被合併會社의 當期純利益도 마치 그 期間初에 合併이 이루어진 것처럼 취급하여 두 企業의 當期純利益을 合計한 金額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持分「푸울링」法은 合併後 合併企業의 當期純利益을 보다 유리하게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같은 持分「푸울링」法을 經營者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持分「푸울링」法의 會計處理는 대개 財務諸表上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 이유는 경영상의 能率을 과장해서 표시하고 株當利益額을 合併前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合併後 合併企業의 당기순이익을 보다 유리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ii) 持分「푸울링」法은 資産再評價에서 발생하는 株當利益額의 減少를 방지하고 株價收益率에 영향을 미쳐서 대개 合併後 株當純利益의 증가를 나타내며 따라서 株價도 上昇하여 일약 成長企業으로 出現하게 되는 것이다.

iii) 持分「푸울링」法을 사용하면 被合併會社의 資産 등은 그대로 帳簿價額으로 移轉되기 때문에 合併으로 인해 발생되는 營業權이나 기타 無形資産의 相當額을 貸借對照表에서 除去시키는데 편리한 방법이다.

iv) 合併當事會社의 留保利益(利益剩餘金)을 그대로 合算하기 때문에 利益分配를 위한 配當可能額을 減少시키지 않는다.

v) 普通株 발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持分「푸울링」法은 企業資産이 株主에게 分配되지 않고 消滅會社 資産이 取得會社에서 過多하게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새로 投資되는 資本도 없고 所有持分이 消滅되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도 不拘하고 그동안 「dirty pooling」(13)이라는 內容의 論文이 發表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비판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푸울링」法의 이점을 이용하여 合併後 純利益을 유리하게 표시하는 利益操作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다.

ii) 承繼되는 個別資産에 대한 評價를 하지 않고 帳簿價額에 의하여 會計處理를 하므로 資本充實의 原則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iii) 持分「푸울링」法을 사용하는 理論的 근거는 議決權 普通株를 교환함으로써 株主의 이해관계의 계속적인 立場을 前提로 한다면 現金의 授受가 따르는 企業合併은 「푸울링」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당연할 것이다.

iv) 持分「푸울링」法은 처음에는 株主가 참여했던 相對的으로 동등한 규모의 會社에 적용되었으나 現在는 株式과 株式을 交換할 때는 아무런 조건없이 相對的 규모는 중요시하지 않고 持分「푸울링」法이 적용되며 만일 迂廻的인 取得의 현 추세가 계속된

(11) J.F. Dewhirst,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Toronto, CICA, September, 1972), pp.507~508.
(12) 李慈馨, 合併의 理論과 實務, 國稅資料社, 1983, p.126.
(13) Abraham J. Briloff, "Dirty Poolings," Accounting Review, (July, 1967), pp.489—496.

다면 극단적인 100% 現金取得의 경우도 持分「푸울링」法으로 처리될 것이다.[14]

v) 合併時 나타나는 利益을 過大表示하기 위해 合併時點에서의 資産費用을 은폐하는 Dirty Pooling과 株主들을 誤導시키기 쉬운 會計制度方法은 실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5]

vi) 持分「푸울링」法의 가장 큰 단점은 合併去來의 經濟的 實質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2. 買收法[16]

買收法이란 會社合併에 있어서 한 企業이 다른 企業을 取得한다는 관점에서 會計處理하는 方法이다. 買收法의 基本立場은 合併을 함에 있어 各財産을 公正한 現實價로 평가하여 被合併會社의 純資産을 買入하는 방법에 의해 合併이 이루어진다. 買收에 의해 合併會社는 被合併會社의 資産·負債를 양수하고 이와 交換으로 現金 또는 株式을 交付하는 것이다.

取得된 資産은 現行市場價格 또는 購入去來에 의해 고려된 價値가 되는데, 둘중 더 確定的인 것이 선택된다. 여기서 負債는 보통 合併會社가 그대로 양수하므로 새로운 評價問題는 발생하지 않는다. 合併會社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양수받은 資産에 대한 評價는 取得當時의 市場價格이지만 原價가 된다. 즉, 合併會社는 購入價格인 原價로 資産을 計上하므로 原價主義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歷史的 原價會計原則과도 일치하는 會計方法이라고 생각된다.

買收法에서는 取得한 資産을 現行市場價格 또는 購入價格으로 計上하는 것이므로, 購入資産의 價値는 純資産의 구입으로 지불한 代價가 된다. 買收에 의한 合併은 資産을 取得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구입에 지불한 代價를 각 個別資産에 配付하여야 한다. 그리고 支拂한 代價가 各 個別資産의 全體市場價値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이 營業權(goodwill)이 된다. 따라서 企業合併을 買收法에 의해 會計處理하면 合併後 數年에 걸쳐 減價償却費와 營業權償却이 損益計算書에 나타나게 된다.

이외에도 買收法의 特性에 대해 살펴보면

i) 새로운 會計責任의 基礎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會計硏究公報(ARB) No. 48에 의하면 "만일 企業合併時에 買收法이 적용된다면 資産에 대한 會計處理는 取得會社가 포기하는 資産의 原價 또는 公正한 時價에 基礎를 두거나, 아니면 資産의 評價價値, 또는 이러한 價値의 結合에 그 基礎를 둔다."는 것이다.[17]

ii) 相對的 規模의 面에서 그 特性을 찾을 수 있다. ARB. NO. 40에 따르면 買收法은 合併時 어느 企業이 다른 企業에 비해 그 規模가 아주 적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指摘하고[18] 있다.

iii) 傳統的으로 買收法은 合併會社가 被合併會社를 繼續企業으로 評價한다는 것이다.

繼續企業으로서의 評價는 주로 그 收益力을 중심으로 綜合的으로 결정된다. 또한 評價價値는 合併時의 時價로 評價되므로 合併差益 아니면 合併差損이 발생하고 Inflation 期에는 淸算所得이 발생하여 合併費用이 많이 들게 된다.

1) 買收法의 會計處理

(1) 資産·負債

合併會社는 被合併會社로부터 承繼하는 資産·負債를 公正한 時價로 評價한 取得原價를 合併會社의 資産·負債計定에 配分處理한다. 이때 個別資産의 評價額의 合計額을 초과하여 支給한 企業의 價値가 營業權이 된다. 그러나 取得純資産의 價額이 支給代價인 取得原價를 초과하는 경우 同差額은 取得한 純資産중에서 流動資産을 제외한 諸資産에 配分하여 控除處理하고 만일 그래도 殘餘分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일종의 移延負債項目으로 기재하였다가 一定期間에 걸쳐 償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合併差益으로 보아 資本準備金으로 積立된다.

(2) 資本金·利益剩餘金

買收法의 立場에서 보면 消滅되는 會社로부터 承繼한 資産을 時價로 評價하여 存續하는 會社의 株式을 발행하여 주므로서 資本의 增加를 가지오며, 이때 株式의 發行價額이 額面價보다 높은 경우에는

(14) Dean S. Eiteman, "Pooling and Purchase Account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7, pp. 4—5.
(15) Hai Hong, Robert S. Kaplan and Gerschon Mandelker, "Pooling vs. Purchase," The Accounting Review, (Jan. 1978), p. 32.
(16) 買入法 혹은 購買法이라고도 한다.
(17) Samuel, R. Sapienza, "Pooling Theory and Practice in Business Combination," The Accounting Review (Apr., 1962), p. 265.
(18) Samuel, R. Sapienza, "Distinguishing between Purchase and Pool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June, 1961), p. 38.

合併差益이라는 개념은 적합치 않고 株式發行超過金으로서 資本剩餘金이 발생하게 된다. 買收法에서는 被合併會社의 留保利益을 除去시키기 때문에 合併會社로 承繼되지 않고 消滅해 버린다.

買收法의 諸般特性 등을 근거로 하여 그 理論的 妥當性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買收法의 特性중의 하나는 取得된 企業은 會計的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出發을 한다는 것이다.[19]

被合併會社의 資産이 過大評價되었더라도 合併時 公正한 價値로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缺損金도 合併으로 인해 除去될 수 있다는 것이다.[20]

ii) 買收法은 原價主義 會計原則을 基礎로 하고 있다. 買收에 의해 取得된 資産과 負債의 評價額은 交換으로 주어진 資産이나 持分의 評價額으로 記錄되어야 한다는 傳統的인 개념에 기초를 두며 이 價値가 다음 期에 보고되는 歷史的 原價가 된다. 그러므로 原價主義의 利點은[21] 原價가 취득당시의 去來價格이고 客觀的이고 檢證可能하고, 確實性이 있다는 점이다.

iii) 買收法에서는 時價에 의한 評價가 이루어 지므로 會計情報利用者를 誤導시키는 情報를 제공하지 않으며 따라서 株價를 歪曲시키지 않는다.[22]

1940年代 후반에는 企業合併의 대부분을 會計上 買收로 보고 傳統的인 取得原價會計原則에 따라 處理해 오던 買收法이 다음과 같은 批判을 받고 있다.

i) 企業合併時 資産의 評價額이 帳簿價額보다 높을 경우 合併後에 보다 많은 減價償却額이 計上되어 數年동안 純利益이 낮아지는 결과를 招來할 것이다.

ii) 資産이나 交付株式의 時價를 결정하는데 公正한 價格算定의 어려움과 株價操作의 可能性이 있다.

iii) 被合併會社의 留保利益이 合併會社로 移越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蓄積된 利益으로 分配할 수 있는 配當可能利益의 減少를 招來한다.

iv) 買收法의 理論的인 약점은 企業價値評價로 인한 營業權計上에 濫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v) 買收法의 단점으로는 資産評價에 의한 營業權의 過大計上과 이의 償却問題, 有形資産의 評價에 따른 純利益의 減少, 株主利益의 減少, 그리고 企業의 主要 財務比率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의 選擇基準

(1) 會計硏究公報 第48號의[23] 基準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의 ARB 第48號에서 買收法과 持分「푸울링」法의 主要한 差異點을 法律이나 稅務上 문제보다는 合併去來에 중요점을 두고 두 방법을 구별하는 基準을 指示하였다.[24]

① 持分의 繼續性, ② 議決權의 變更與否
③ 經營權의 變動, ④ 株式配分의 不均衡
⑤ 規模의 相對性, ⑥ 營業의 繼續性

이 基準중 持分, 營業內容, 經營權 및 企業支配權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買收法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持分「푸울링」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企業合併이 위에서 提示한 諸動機의 複合的인 결과로서 발생되며 어느 한가지 基準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設定된 基準을 綜合的으로 檢討·判斷하여 決定해야 할 것이다.[25]

(2) 美國證券去來委員會(Security Exchange Committee: SEC)

合併會計의 처리방법에 따라 財務諸表上의 帳簿價額 및 株當收益率에 현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一般投資家 및 財務分析家에게 心理的인 자극을 주어 株式의 市場價格形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SEC에서는 合併會計處理方法에 대해 아무런 基準도 提示하지 않고 있다. 다만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準據하여 合併이 實施되었다."는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만 添付되어 있으면 適切한 會計處理로서 인정하고 있다.[26] 이와같이 SEC가 合併會計處理方法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經營者들이나 會計士들이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企業에 有利하게 一貫性없이 會計處理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그후 1975~76年 사이에 SEC은 APB NO. 16의 基準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었다.

(19) 南相午, 前揭書, p. 1267.
(20)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3rd ed (Homewood D-Irwin Inc, 1977).
(21) 南相午, 前揭書, p. 338.
(22) Hai Hong, Robert S. Kaplan, and Gerschon Mandelker, op. cit., p. 32.
(23) Accounting Research Bulletine No. 48.
(24) Arthur R. Wyatt, op. cit., pp. 131—134.
(25) Eldon S. Hendrikson, op. cit., p. 544.
(26) D. S. Eiteman, op. cit., p. 5.

(3) 會計原則審議委員會(APB)의 基準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의 區分基準은 수차에 걸쳐 會計規程을 제정해 왔는데 ARB NO. 48 이후 1963年 會計調査硏究 第5號(ARS NO. 5)에 이어 APB Opinion NO. 16에서 오늘날 美國에 有力한 會計規程이 確定되었다. 또한 買收法에서의 營業權 會計處理는 APB Opinion NO. 17에 規定되었다. AICPA의 APB Opinion NO. 16에서는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의 區分基準과 會計處理公示에 대해 상세히 規定하고 있으며 12가지 基準에 대해 列擧하고 있다.[27] 이 意見에서는 두가지 合併方法중 어느 한 가지만을 選擇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基準은 모두 持分「푸울링」法의 使用條件이 되는 것이며 이 條件에 하나라도 저촉되면 買收法에 의해 處理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이를 羅列하면 다음과 같다.

① 合併當事會社는 合併計劃을 수립하기 2年前 이내에 當事會社間의 從屬會社 또는 事業部가 돼서는 안된다.

② 合併會社는 서로 獨立的이어야 하며 合併이 진행된 이래 다른 企業의 株式(普通株式)의 10%이상을 所有해서는 안된다.

③ 企業合併은 單一去來로 이루어 지거나, 合併計劃이 시작된지 1年 이내에 具體的 計劃에 의해 遂行되어야 한다.

④ 存續會社는 合併計劃이 完了된 날 그에 상응한 株式을 발행해야 한다.

⑤ 合併當事會社는 各各 同一한 議決權 普通株持分의 상당부분을 계속 保有해야 한다.

⑥ 合併當事會社는 合併 이외의 目的에서만 自己株式을 取得할 수 있고, 合併計劃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自己株式을 取得할 수 없다.

⑦ 合併會社내에서 個別普通株主의 持分과 다른 普通株主의 持分比率은 合併으로 인하여 株式이 交換된 뒤에도 同一해야 한다.

⑧ 存續會社내의 株主持分에 의해 議決權이 行使될 수 있어야 하며, 權利行使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⑨ 合併은 合併計劃이 끝나는 날 株式發行 등 모든 事項이 完了되어야 한다.

⑩ 合併當事會社는 合併時에 발행한 普通株式의 전부 또는 一部를 직접, 간접으로 다시 償還하거나 再取得하는 事項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⑪ 合併會社는 被合併會社의 이전 株主와 다른 變動된 財務的 關係를 가져서는 안 된다.

⑫ 合併會社는 合併된 후 2年 이내에 被合併會社로부터 引受받은 主要資産을 處分할 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4. 合併會計의 處理方法과 財務諸表能力

앞에서 설명한 合併會計의 原理 및 處理方法을 좀 더 具體的으로 事例를 들어 買收法과 持分「푸울링」法의 相異한 會計處理가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Mosich의 例示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

1979年 A社는 Z社를 吸收合併하기로 하고 A社는 Z社의 株主에게 舊株式과 交換으로 A社의 普通株(額面 $10.00) 250,000株를 交付하기로 하였다. A社에 의해서 發行된 株式의 總價額은 $15,000,000이며 그 計算의 基礎가 되는 Z社 資産評價의 內譯은 다음과 같다.

現金·受取計定	$1,200,000
在庫資産	3,250,000
設備(殘存期間 10年)	4,250,000
營業權(殘存期間 10年)	7,800,000
A社의 引受負債	1,500,000
純資産의 價額	$15,000,000

또한 合併전의 A社와 Z社의 財務資料는 다음과 같다.

合併前의 財務資料

	A會社	Z會社
現金 및 受取計定	$ 7,000,000	$1,250,000
在庫資産	8,000,000	2,000,000
設備	5,000,000	1,750,000
	$20,000,000	$5,000,000
流動負債	5,000,000	1,000,000
設備購入契約	2,000,000	500,000
資本金(額面 $10.00)	5,000,000	1,000,000

(27) APB. Opinion No. 16., "Business Combination," AICPA, 1970, Pars. 45~48.
(28) A. N. Moisch, "Impact of Merger Accounting on Post-Merger Financial Report," Management Accounting, (December, 1965), pp. 21—28. 李壺鼎, "企業合併에 따른 會計處理에 대한 考察", 會計 第10號, 韓國公認會計士會, 1973, pp. 72—78.

資本剩餘金	0	500,000
利益剩餘金	8,000,000	2,000,000
	$20,000,000	$5,000,000
合併前發行株式	500,000株	100,000株
1978年 總所得	$2,000,000	$500,000
1978年 1株當所得	4.00	5.00
1978年 資出總額	15,000,000	10,000,000
1978年 株式時價	60.00	150.00
1978年 12月 1株當 帳簿價額	26.00	35.00
1978年 12月 株價收益比率	15倍	30倍

위의 財務資料를 基礎로 하여 A會社와 Z會社가 合併한 후의 合併去來 및 合併貸借對照表를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의 處理에 의하여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合併會計處理의 二側面

(單位 : $1,000)

計定科目	買收法		持分「푸울링」法	
	借邊	貸邊	借邊	貸邊
現金 및 受取計定	1,200		1,250	
在庫資産	3,250		2,000	
設備	4,250		1,750	
營業權	7,800		0	
流動負債		1,000		1,000
設備購入契約		500		500
資本金		2,500		2,500
資本剩餘金		12,500		0
利益剩餘金		0		1,000

合併後 貸借對照表

(單位 : $1,000)

資産	買收法	持分「푸울링」法
現金·受取計定	8,200	8,250
在庫資産	11,250	10,000
設備	9,250	6,750
營業權	7,800	0
	36,500	25,000
負債·資本		
流動負債	6,000	6,000
設備購入契約	2,500	2,500
資本金	7,500	7,500
資本剩餘金	12,500	0
利益剩餘金	8,000	9,000
	36,500	25,000

이상의 事例는 買收法에 의할 때 在庫資産 및 設備資産의 帳簿價額을 增加 計算하고 방대한 營業權을 計上한 反面에 受取計定에서의 不良債權의 일부가($1,250,000에서 $1,200,000) 減價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帳簿價額으로 $3,500,000에 購入할 수 있는 것을 $15,000,000로 購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營業權과 같은 無形固定資産의 評價問題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在庫資産 增價計算	$1,250,000
設備의 增價計算	2,500,000
營業權의 計上	7,800,000
不良債權의 差減	50,000
資産增價計算合計	$11,500,000

이와같이 買收法에서는 資産은 合併時 評價되는 公正時價로 記入되며, 특히 營業權의 本質을 創業者의 利益으로 看做하여 設備 등 有形固定資産의 增價計算部分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合併後 減價償却의 증대를 통한 報告原價의 증대, 報告利益의 減少로 나타나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보면 合併後 매년 $1,030,000(設備 $2,500,000+營業權 $7,800,000 增加分을 殘存期間 10年으로 나눔)만큼의 減價償却費가 발생하여 利益이 減少하게 된다.

持分「푸울링」法에서는 合併後 貸借對照表에 있어서 資産과 負債는 帳簿價額 그대로이며 다만 株主의 持分이 $3,5000,000 增額되었으나 그것은 Z社의 資本金,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의 合計와 동일한 것이다. 즉 Z社의 資本剩餘金 $500,000과 利益剩餘金 $1,000,000이 資本金으로 轉入된 것에 불과하다.

合併후 財務資料, 諸比率 및 利益率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合併後 財務資料

	買收法	持分「푸울링」法
資産合計	$36,500,000	$25,000,000
株主持分合計	28,000,000	16,500,000
流動資産	19,450,000	18,200,000
流動負債	6,000,000	6,000,000
純運轉資本	13,450,000	12,200,000
流動比率	324%	303%
設備購入契約對設備比率	1 : 3.7	1 : 2.7

1株當 帳簿價額	37.33	22
資産負債比率	23.3%	34.0%

앞의 財務資料를 기초로 하여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의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장래 財務活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合併前의 A社와 Z社의 總資出額이 合併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設備의 相互利用으로 原價의 節減($240,000)이 可能하다고 가정하면 合併後 第1次年度의 利益豫測은 다음과 같다.

合併後 利益豫測

	買 收 法	持分「푸울링」法
合併前利益	$2,500,000	$2,500,000
合併에 따른 原價節減	240,000	240,000
設備減價償却	(250,000)	0
營業權償却	(780,000)	0
合併後利益	1,710,000	2,740,000
1株當利益	$2.28	$3.65

合併前 A社의 1株當利益은 $4.00이나, 여기에 Z社를 合併함으로써 交付한 株式 250,000株를 고려해서 보면(A와 Z社의 純利益÷發行株式數=$2,500,000÷750,000株)$3.33이 된다. 여기에 合併時 買收法을 적용함으로써 設備增加에 따른 減價償却이 增加되어 合併에 따른 原價要素의 節減을 上廻하여 報告利益은 合併전보다 적은 $1,710,000이 되며 1株當利益은 $2.28($1,710,000÷750,000株)가 된다. 한편, 持分「푸울링」法에 의하면 合併에 따른 原價要素의 節減이 그대로 利益에 반영되어 그 報告利益은 $2,740,000이 되며 1株當 利益($2,740,000÷750,000株)은 $3.65가 된다. 그러므로 合併前의 A社와 Z社의 平均株當利益을 合併後와 비교해 보면 持分「푸울링」法에서는 $0.32 增加하였고 買收法에서는 $1.05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企業으로 하여금 合併會計處理에 있어서 持分「푸울링」法을 적용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持分「푸울링」法이나 買收法에 의한 純利益의 차이는 단지 簿記的 處理에 의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經營에 기여하는 資本上의 効果는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Cash flow 分析을 통해 보면 분명해 진다.

Cash flow 分析

買收法에 의한 利益	$1,710,000
設備減價償却	250,000
無形固定資産償却	780,000
持分「푸울링」法에 의한 利益	$2,740,000

즉 買收法에 따른 純利益에 償却에 의한 資金의 증가액을 加算하면 持分「푸울링」法에 의한 純利益과 일치하게 된다.

5. 變形된 合併會計處理

지금까지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에 의한 合併會計處理方法을 실제 적용하여 보았다. 특히 AICPA에서는 ARB NO.48이나 APB Opinion NO.16 등을 통하여 合併會計의 指針을 발표했지만, 企業實務面에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방법을 混用하는 사례가 흔히 있다. 이와같이 一貫性없는 會計處理는 배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의 설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變形會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i) 部分「푸울링」法

部分「푸울링」法이란 合併會社가 取得代價로 現金 및 現金에 상당하는 金額을 證券과 代替하여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現金이나 現金에 상당하는 代替證券部分에 대해서는 買收法으로 처리하고 株式發行部分은 持分「푸울링」法으로 會計처리하였을 때 이를 말한다. 이 方法은 持分「푸울링」法과 買收法을 區分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관성 없는 會計方法이라 할 수 있다. 美國의 實務界에서는 現金과 株式이 企業合併에 동시 사용되었다 해서 모두 部分「푸울링」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現金交付比率이 25~75%인 경우 部分「푸울링」法을 적용한다.[29]

ii) 바겐買收法

消滅會社 帳簿上의 純資産이 買入價額을 초과할 때 實務에서는 合併要件들이 분명히 持分「푸울링」法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買收法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의 會計處理를 바겐買收法이라 한다.[30] 즉, 有望業種의 企業이 經濟的으로 약세에 있을 때 當該企業을 염가로 買收合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9) D.S. Eiteman, op.cit., p.37.
(30) Ibid., p.37.

iii) 遡及「푸울링」法

이것은 특수한 형태의 企業合併으로서 원래는 買收法으로 會計處理를 하였다가 후에 持分「푸울링」法으로 변경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現狀을 遡及「푸울링」法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原則的으로 會計處理의 繼續性에 위배되는 方法이라 할 수 있다.[31]

iv) 其他 變形된 合併會計

合併會計處理에 대한 이상과 같은 方法외에도 實務에서는 被合併會社의 留保利益을 資本化하는 「푸울링」法과 取得會社의 留保利益으로 消滅會社의 帳簿價額을 초과하는 支給代價를 組織的으로 償却하는 買收法 등이 있다. 前者는 「푸울링」法과 買收法의 本質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會計處理方法이며, 後者는 合併日에 營業權을 留保利益이나 資本剩餘金으로 즉시 償却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健全한 會計原則에 위배되는 方法이다.

6. 營業權의 會計處理

(1) 營業權 會計의 發展過程

ARB NO. 40에 있는 概念은 상당기간을 통하여 발전된 것이지만 買收法과 持分「푸울링」法은 구분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1944年 이후 AICPA와 SEC에서 언급된 合併營業權의 會計處理에 관한 理論을 檢討해 보는 것도 有用한 것이다.[32]

ARB NO. 24(1944)에서는 企業合併時 買收營業權을 留保利益과 資本剩餘金으로 즉시 償却處理하는 方法을 實務上 認定하였다. 그렇다고 理論的으로 채택될 수 있는 方法은 아닌 것이다. 만일 買收營業權을 留保利益으로 즉시 償却해 버리면 마치 合併이 持分「푸울링」法으로 처리한 것처럼 동일한 結果를 초래한다. 會計叢書(Accounting Series Release NO. 50) 第50號(1945)에서는 企業合併으로 인하여 발생한 營業權을 期間收益에 對應하여 償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ARB NO. 43(1953)에서는 買收營業權을 取得後에 資本剩餘金이나 留保利益으로 즉시 償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耐用年數가 限定되어 있는 無形固定資産은 推定된 殘存期間내에 損益計算書上의 收益에 對應하여 組織的으로 償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PB NO. 9(1966)에서는 營業權의 耐用年數가 非合理的으로 推定되어 있고 營業權의 代價가 過重하더라도 留保利益에 의한 特別償却은 許用될 수 없고, 利益에 의한 償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PB NO. 16(1970)에서도 買收法이나 持分「푸울링」法을 모두 認定은 하지만 이 두가지 會計處理方法은 서로 代替的인 方法은 아니고 어느 한 가지 方法만을 적용하도록 規定하였다. 이는 持分「푸울링」法을 適用해야 한다는 내용이면서도 되도록이면 持分「푸울링」法을 抑制하고 買收法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展開된 것 같기도 하다.

(2) 營業權에 관련된 會計處理

여기서 論議의 촛점은 營業權償却에 대한 會計處理問題이다. 이에는 3가지 方法이 있다.[33]

i) 營業權의 價値가 減少될 때가지 營業權을 무한히 存續시키는 方法

ii) 資本金計定에서 즉시 除去하는 方法

iii) 耐用年數에 걸쳐 營業權을 償却하는 方法

세번째 方法이 대다수 會計擔當者들의 見解이다.

이상에서 營業權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으나 財務諸表上의 營業權問題에 관한 만족스런 解決策은 없는 것 같다. 다만 交付資産價値와 引受된 純資産의 現行價値 사이의 差額으로 測定된 營業權을 즉시 償却하는 것이 그래도 무난한 解決方案인 것 같다.[34] 그러나 즉시 償却하는 방법도 妥當하지 못하며 빠른 시일내에 償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Ⅳ. 우리나라의 合併會計

1. 우리나라의 合併現況

우리나라에서의 企業合併은 朝鮮電業, 南電, 京電의 소위 電力 3社의 統合과 朝鮮運輸와 韓國米倉의 合併에 의한 大韓通運의 設立을 효시로 하여 매년 많은 企業들의 合併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35]

우리나라 商法規定上 「合併이란 商法의 特別規定에 따라 合併하는 경우 淸算節次를 거치지 않고 被合併法人의 財産(權利義務)을 존속하는 會社에 承

(31) Maurice, Moonitz, "The Basic Postulate of Accounting," ARS. No. 1, AICPA, 1961, p. 53.
(32) D. S. Eiteman, op. cit., p. 60.
(33) 鄭鍾岩, 中級會計, 法文社, 1983, pp. 330—331.
(34) Malcolm C. Miller, "Goodwill-An Aggregation Issue,"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73), p. 291.
(35) 金在燦, 投資, 韓國投資公社, 1976, 5號, pp. 21—22.

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商法의 취지로 볼 때 合併은 經濟的으로 競爭의 回避, 費用의 節減, 市場의 獨占 등을 위하여 認定되며, 消滅하는 會社에 대하여 淸算節次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商法이 요구하는 企業維持原則에 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구나 政府에서는 商法上 合併에 관한 特別規程외에 合併奬勵政策을 취하여 法人稅法上 合併奬勵業種에 해당하는 合併의 경우에는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과 被合併法人의 株主에게 歸屬되는 擬制配當金에 대하여 非課稅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淸算所得과 擬制配當은 現物出資方式으로 인한 合併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바 따라서 現物出資方式으로 合併함에 있어서 가장 큰 障碍要素인 租稅問題에 대하여 非課稅措置를 함으로써 合併을 적극 권장하려는 政府의 意圖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現行稅法上 被合併法人의 諸準備金, 充當金, 積立金, 稅法에서 규정한 諸申告事項 등을 被合併法人의 帳簿價額대로 合併法人에 그대로 承繼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持分「푸울링」法에 대하여 强力한 뒷받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現行 商法上으로는 合併自由의 原則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會社끼리도 合併할 수 있으나, 다만 무제한의 자유는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몇가지 制限을 두고 있다. 또한 1976年 12月에 證券去來法의 全面改正에 의하여 改正證券去來法은 證券市場內에서의 公開買收(tender offer)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合併會社와 被合併會社의 經營陣이 株式交換比率에 있어서 서로 타협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合併會社에서 合併對象會社의 株主로부터 證券市場에서 직접 公開買收를 함으로써 經營統制權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36]

2. 우리나라의 合併會計處理

우리나라 商法上 合併의 本質은 買收說과 持分「푸울링」說의 입장중 어느 편에 속하는가 하는 具體的인 規定은 없다.

우선 買收說의 입장에서 볼 때 商法規定上 資産의 評價方法(商法 第452條)에서 合併의 경우에 대한 具體的인 규정이 없는 점, 合併의 경우는 淸算節次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資本準備金(商法 第459條)에 대한 規定에 있어서 會社合併의 경우 消滅會社로부터 承繼한 純資産의 價額이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의 資本增加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合併差益으로 보아 資本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 消滅會社로부터 승계한 資産의 價額이 帳簿價額을 의미하는지 時價에 의한 評價額을 의미하는지 明示되지 않은 점, 또한 同條에서 株式發行差金과 合併差益을 별도로 구분하므로 저어도 買收說의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37]

持分「푸울링」說도 淸算節次가 필요없고 帳簿價額에 의하여 消滅會社의 資産을 承繼할 수 있으며, 특히 商法 第459條의 資本準備金 規定에 의하면 合併差額중 消滅會社의 任意準備金에 상당하는 額은 資本準備金으로 計上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 바 이를 보아도 持分「푸울링」說의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商法외에 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에도 아직까지 合併인 경우의 財産評價基準이 提示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消滅會社의 諸準備金, 充當金, 積立金을 그대로 承繼시킬 것인지의 與否에 대하여 뚜렷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持分「푸울링」說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完全치가 못하다.

그러나 稅法에서는 企業合併의 권장을 促進하기 위한 여러가지 規定, 즉 承繼資産의 評價差 외에는 淸算所得을 課稅하지 아니하며(法人稅法 第15條 第1項 第3號) 諸準備金, 積立金 등은 消滅會社의 帳簿價額대로 存續하는 會社에 승계할 수 있으며(租稅減免規制法 第17條 第1項 第4號) 특히 政府가 권장하는 合併奬勵事業에 대한 合併의 경우에는 비록 評價益으로 인한 淸算所得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淸算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함으로써(法人稅法 第42條의 2) 合併을 권장하는 의지로 보아 持分「푸울링」說의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合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V. 結 論

이상에서 企業合併이라는 經濟的 事實에 대해 合理的 意思決定을 위한 會計處理基準과 方法 그리고 우리나라 合併會計를 고찰하였다.

合併의 本質은 會計的 관점에서 볼 때 持分「푸울

(36) 安文宅, 證券去來法槪論, 博英社, 1983, p. 189.
(37) 李慈澤, 前揭書, p. 164.

링」法과 買收法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各各 그 適用에 따라 合併會計의 내용은 相異하게 표시된다.

持分「푸울링」法의 경우에는 合併시 실제로 資産의 賣却이나 購入이 발생하지 않고 이전의 獨立된 經濟主體들이 하나의 經濟主體로 合一하는데 불과하므로 被合併會社의 資産, 負債, 資本金은 물론 剩餘金項目도 帳簿價額대로 변경없이 그대로 存續會社에 承繼되어 企業合併으로 인한 經濟的 實質에는 變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合併會社의 經濟的 實質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買收法에서는 合併主體(存續會社, 設立主體)에 의한 새로운 設備의 증가로써 繼續企業을 取得하는 것이며, 이러한 取得에 대한 會計責任은 合併主體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持分「푸울링」法에서 발생하는 架空利益이 생기지 않으므로 利害關係者의 利益이 擁護되며, 經營에 機能하는 資本上의 効果는 持分「푸울링」法과 同一하다. 이런 점에서 買收法은 會計情報의 利用者들에게 유용한 會計情報를 提供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買收法에서 발생되는 營業權의 會計處理方法은 다음과 같다.

i) 營業權 價値의 감소가 발견될 때까지 營業權을 무한히 存續시키는 方法

ii) 資本金計定에서 즉시 除去하는 方法

iii) 耐用年數에 걸쳐 營業權을 償却하는 方法

그러나 耐用年數가 法律에 정해져 있고 法的保護를 필요로 하는 無形資産은 有効期間내에 償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制限年數없는 無形資産이 企業의 收益力을 증대시키고 있고 會社가 政策的으로 廣告, 宣傳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價値를 유지시키고 있을 때는 그 收益力에 있어서 영구한 훼손이 있을 때까지는 資産에서 償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自由競爭의 資本主義 經濟下에서는 超過收益力은 競爭企業의 개입으로 減少하는 수가 많고 營業權 자체도 客觀性이 缺한 資産이므로 適正한 기간내에 償却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硏究에서 볼 때 合併會計處理는 買收法으로 一貫性있게 처리하는 것이 會計情報의 有用性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나라는 獨逸이나 日本의 會社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자연 持分「푸울링」說의 입장으로 기울게 되었고 또한 企業의 歷史가 짧고 아직은 中小企業의 保護를 필요로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合併을 장려하려는 狀況에 있으므로 일응 持分「푸울링」說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美國에서는 持分「푸울링」方式에 의한 合併을 인정하면서 그것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APB NO. 16을 公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持分「푸울링」說에 의한 合併의 濫用 혹은 惡用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方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學界나 實務界에서도 合併會計의 處理基準과 方法에 대한 많은 硏究를 통해 具體的인 발표가 있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金在燦, 投資, 韓國投資公社, 1976年 5月號.
2. 南相午, 會計理論(下), 日新社, 1979.
3.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83.
4. 徐燉珏, 商法講義(上), 法文社, 1981.
5. 沈昞求, 財務管理, 博英社, 1981.
6. 安文宅, 證券去來法槪論, 博英社, 1983.
7. 李奎昌, "企業合併에 따른 會計處理에 관한 考察", 會計 第10號, 韓國公認會計士會, 1973.
8. 李愚澤, 合併의 理論과 實務, 國稅資料社, 1983.
9. 鄭鍾岩, 中級會計, 法文社, 1983.
10. APB. Opinion NO. 16., "Business Combination," AICPA, 1970.
11. Briloff, Abraham J., "Dirty Poolings," Accounting Review (July, 1967).
12. Dewhirst, J.F.,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Toronto, CICA, September, 1972).
13. Eiteman, D.S., "Pooling and Purchase Account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7.
14. Hendriksen, Eldon S., Accounting Theory, 3rd ed(Homewood D Irwin Inc., 1977).
15. Hong Hai, Kaplan, Robert S., and Mandelker Gershon, "Pooling vs. Purchase," The Accounting Review(Jan. 1978).
16. Lauver, R.C., "The Case of Poolings," The Accounting Review (Jan. 1966).
17. Miller, Malcolm C., "Goodwill—An Aggregation Issue", The Accounting Review(April, 1973).

18. Moonitz, Maurice, "The Basic Postulate of Accounting," ARS. NO. 1, AICPA, 1961.
19. Mosich, A. N., "Impact of Merger Accounting on Post-Merger Financial Report," Management Accounting(December, 1965).
20. Sapienza, Samuel, R., "Distinguishing between Purchase and pool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June, 1961).
21. Sapienza, Samuel, R., "Pooling Theory and Practice in Business Combination," The Accounting Review(Apr. 1962).
22. Weston, J. Fred, and Brigham, Eugene F., Managerial Finance, 7th ed (The Dryden Press), 1981.
23. Wyatt, A. R., "A Critical Study of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ARS NO. 5 (New York: AICPA, 1963).